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중 개정내용

그간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돼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개정작업이 최근 완료돼, 지난 10월 20일 공포되었다. 에너지계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정내용을 소개한다.

- 개정 공포 : 1997. 10. 20(통상산업부령 제72호)
- 개정 이유
 -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시·도지사의 제조·설치·사용검사를 면제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검사소요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고,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교육기관을 복수화 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일정한 검사시설 및 인력을 보유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제조업자가 제조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제(제35조 제1항 제4호)
 - 약정보험금액 500억원 이상인 사용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일 현재 최근 3년간 재해발생이 없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사용자에게 대해 계속사용검사, 장소변경검사, 개조검사 면제(제35조 제1항 제5호)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통지, 검사증교부, 불합격 통보 등의 소요기간 규정(제43조)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등을 정함(제49조의 3)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안전관리 교육을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열관리사협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제1항 본문)
- 시행일
 - 199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검사면제관련)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	개정 전문
<p>○ 제3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신설하고, 제4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하며,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p>	<p>제35조 【검사의 면제】 ① 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0에서 정한 검사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 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수준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이상일 것. 나. 제조시설·검사시설·기술인력 등 검사대상기기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조건에 적합한 공정 및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3.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종의 사업장에 설치된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검사기기의 계속 사용검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검사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재해발생이 없는 업체에 설치된 검사대상기기 나. 최초 설치 후 5년 이내이고 연속하여 2회 이상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4.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별표 10의2의 요건을 갖춘 제조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 별표 10의3의 검사시설 및 인력을 보유할 것 5.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사용자에게 대한 계속 사용검사·설치장소변경 검사 및 개조검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별표 10의2요건을 갖춘 사용안전보험으로서 약정보험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용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 보험가입일 현재 최근 3년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재해발생이 없을 것 <p>④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실시하고 제1항제4호의 검사 결과는 매반기별로, 제1항제5호의 검사결과는 해당 검사시기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검사 중 비파괴검사는 원자력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의2규정에 의하여 비파괴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실시한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개정법규 안내

개정내용	개정전문
	<p>⑤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해당 요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가입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타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공단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또는 제조검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제5항에 의한 통보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시·도지사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p> <p>⑨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명 등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⑩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의 면제 범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한다.</p>
<p>○ 제37조제2항 단서를 개정</p>	<p>제37조 【구조검사 신청서】 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검사대상기기의 구조검사신청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과 사용원자재가 이미 검사에 합격한 것인 경우에는 제1호 단서의 서류 중 설계도면 1부는 첨부하지 아니한다.</p> <p>1.~2. (내용생략 : 현행과 같음)</p>
<p>○ 제43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신설 및 제3항 내용 개정</p>	<p>제43조 【검사의 통지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검사의 일시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검사를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날을 검사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이사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 서식 내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검사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은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p>

개 정 내 용	개 정 전 문
	<p>③ 공단이사장은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⑥ (내용생략 : 현행과 같음)</p>
<p>○ 제49조의3을 신설</p>	<p>제49조의3 【검사대상기기자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자종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검사관리대행기관은 별표 11의 2의 관리대행기관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 명세서 2.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고용계약서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4.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5.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p>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 제50조제1항 본문 중 내용 개정</p>	<p>제50조의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한국열관리시공업협회에서 행하며, 검사대상기기자종자에 대한 교육은 공단 및 한국열관리시공업협회에서 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자종자의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 (내용생략 : 현행과 같음)</p>
<p>○ 별표 * 첨부</p>	<p>○ 별표 7중 기관의 적용범위 첫번째란에 “제4호” 삭제</p> <p>○ 별표 10중 강철제, 주철제보일러 대상범위 세번째 란에 “제2호 나목” 삭제</p> <p>○ 별표 10의 2, 10의3, 11의2 각각 신설</p>

개정법규 안내

[별표 7]

검사대상기기 (제31조 관련)

구분	검사대상기기명	적 용 범 위
기 관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1kg/cm ²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mm이하이며 길이가 600mm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1kg/cm ²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m ² 이하인 것. 3. 관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5m ² 이하인 것.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0만kcal/h)을 초과하는 것.
압 력 용 기	1종압력용기	별표1의 압력용기 적용범위에 따름
	2종압력용기	
요 로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이 50만kcal/hkg를 초과하는 것.

[별표 10]

검사의 면제 대상범위 (제35조제1항1호 관련)

검사대상기기명	대 상 범 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1. 소용량강철제보일러 2. 소형관류보일러 3.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8m ²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3.5kg/cm ² 이하인 것.	용접검사
	1. 주철제보일러	구조검사
	1. 전열면적 5m ² 이하의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mm이상인 증기관이 부착된 것. 나. 수두압이 5m이하이며 안지름이 25mm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된 것. 2.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유류 및 가스를 제외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열면적이 30cm ² 이하인 것. 나. <삭제> 다. 가스를 제외한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보일러	계속 사용검사

[별표 10의2]

검사면제보험의 요건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관련)

구 분	보 험 의 요 건
제조안전보험	1.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상 하자과 관련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와 관련된 위험을 담보할 것. 3. 연1회이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른 위험관리서비스를 실시할 것.
사용안전보험	1.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재물중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할 것. 2.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3. 연1회이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른 위험관리서비스를 실시할 것.

[별표 10의3]

보험가입대상제조업자의 검사시설보유기준 (제35조제1항제4호 관련)

구 분	보유대수 및 인원
1. 검사시설	
가. 만능재료시험기	용량 10톤이상의 것 1대이상
나. 수압시험기	20kg/cm ² 이상의 것 3대이상
다. 수질분석설비	산도·경도·염산이온 및 인산이온 분석이 가능한 것 1대이상
라. 가스분석기	3성분(CO, CO ₂ , O ₂)이상 분석가능한 것 1대이상
마. 치수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척이상
바. 표면온도계	1대이상
사. 초음파 두께 측정기	1대이상
아. CO/CO ₂ 측정기	1대이상
자. 가스누설검사기	1대이상
차. 기밀시험설비	1대이상
카. 연소효율측정기	1대이상
타. 안전밸브시험기	1대이상
2. 기술인력	
가. 4년제 대학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기사 1급 기계분야 기사 1급·보일러 기능장 또는 기계분야 기능장	2인이상
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보일러 또는 기계분야기능사	3인이상
다. 가스분야의 기능사	1인이상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 기능사	3인이상

[별표 11의2]

검사대상기기종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49조의3제1항 관련)

장 비		기 술 인 력
장 비 명	보유대수	
1. 급수유량계	3대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금속·화공 및 요업·전기 또는 에너지분야 기술사 1인이상 2. 제47조 및 별표11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인정검사대상기기 종종자 각 5인상
2. 급유유량계	3대이상	
3. 가스분석기(CO ₂ , O ₂ , CO)	5대이상	
4. 열전대온도계(0~1,500°C)	2대이상	
5. 표준온도계	3대이상	
6. 표면온도계	3대이상	
7. 매연측정기	1대이상	
8. 스톱워치	5대이상	
9. 증기압력계	3대이상	
10. 수질분석기	1대이상	
11. 증기전도측정기	1대이상	